

<b>의안 번호</b>	<b>2513</b>	<b>[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(안)]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1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1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9.(화)

### 2. 제안이유

○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받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: 245,916천원 (2025년도 말 조성액 + 2026년도 조성액)  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 ㉑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 ㉓ = ㉒ + ㉑
	수입 ㉒	지출 ㉔	증감 ㉒ = ㉔ - ㉓	
367,411	151,500	272,995	△121,495	245,916

나. 2026년 수입계획: 518,911천원(공공예금이자수입+기부금수입+2025년도 예치금회수)  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수입액	산출내역
합계	518,911	
(216-01) 공공예금이자수입	1,500	공공예금 이자수입 1,500,000원 × 1식 = 1,500,000원
(224-03) 기부금수입	150,000	기부금 12,500,000원 × 12월 = 150,000,000원
(714-01) 예치금회수	367,411	예치금 이월 367,411,000원 × 1식 = 367,411,000원

## 다. 2026년 지출계획: 518,911천원 (일반운영비+기금사업+예치)

(단위 : 천원)

편성목	지출액	산출내역
합계	518,911	
(602-01) 일반예치금	245,916	○ 예치금 245,916,000원 × 1식 = 245,916,000원
(201-01) 사무관리비 고향사랑기금운영	39,750	○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3,000,000원 ○ 답례품 구입비 35,000원 × 1,500건 × 70% = 36,750,000원
(201-01) 사무관리비, (206-01) 재료비, (307-02)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향사랑기금사업추진(환경위생과)	80,000	(201-01) ○ 황방산생태계보전 활동운영비 1,000,000원 ○ 황방산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 4,000,000원 (206-01) ○ 고향사랑 나무심기 재료비 5,000,000원 (307-02) ○ 황방산생물다양성기록화 사업 70,000,000원
(201-01) 사무관리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문화관광과)	20,000	한글의 고장 외솔 최현배 선생 나라 사랑 보급사업 20,000,000원
(405-01) 자산및물품취득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보건과)	70,000	생명지킴이 보건소 구급차 교체 사업 70,000,000원
(401-01) 시설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공원녹지과)	20,000	입화산 자연휴양림 꽃길 조성사업 20,000,000원
(307-01) 의료 및 회복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건강관리과)	25,245	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25,245,000원
(401-01) 시설비 고향사랑 기금사업추진(노인장애인과)	18,000	겨울철 한파 대비 경로식당 온열의자 설치 사업 18,000,000원

## 라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천원)

예탁처	예치 및 예탁액			
	2024년도 말 현재액	2025년도 말 현재액 <sup>㉠</sup>	2026년도 말 현재액 <sup>㉡</sup>	증감 <sup>㉢</sup> - <sup>㉠</sup>
NH농협은행	215,911	367,411	245,916	-121,495

## 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1조  
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근거법규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고행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- 제21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)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 3.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